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97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준혁·이상식

박지원 • 추미애 • 이수진

진선미 • 전진숙 • 서미화
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「형법」상 내란의 죄·외환의 죄,「군형법」상 반란의 죄·이적(利敵)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음.

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

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 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재직 중의 사유로"를 "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"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④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 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 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단서 신설> 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 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 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 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